1

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□ 추진근거

- o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o 「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ㅇ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재계약)

□ 민간위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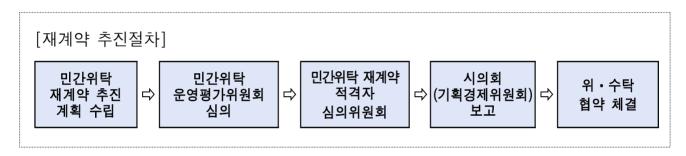
| 구 분 |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|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|
|----------|--|--|
| 소재지 | 종로구 율곡로 56 | 송파구 중대로 97 |
| 규모 | 179 m² | 170 m² |
| 예산('22년) | 675,367천원 | 674,771천원 |
| 수탁기관 | 한국노동조합총연맹 | |
| 위탁기간 | '22. 10. 17. ~ '25. 9. 30. ※ 최초위탁 '19. 10. 17. ~ '22. 10. 16. | '22. 11. 27. ~ '25. 9. 30. ※ 최초위탁 '19. 11. 27. ~ '22. 11. 26. |

o 위탁사무: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(시설형)

- 도심권·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
 - · 상담지원 :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,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등
 - · 교육지원 :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
 - · 기타지원 : 문화·복지·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
-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, 회계운영, 시설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

□ 재계약 추진경과

- o '22. 4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 충족(조직담당관)
 - 도심권 77.61점, 동남권 77.18.점
 - ※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
- o '22. 5. 도심권·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
- ㅇ '22. 7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'적정'(조직담당관)
- o '22. 8.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결과 '적격'(노동정책담당관)



□ 재계약 사유

- o '한국노동조합총연맹'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 관련 교육, 법률지원 및 상담 등 위탁사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.
- '19년 개관 후 3년차로 수탁시설 운영 안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이 필요
 한 바,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완성도 제고
 ※ 시설형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)

□ 향후계획

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(계약심사과, 법률지원담당관) : '22. 9월

o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2. 10~11월